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의 실효성 제고 방안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Monitoring of National Basic Security Scheme



이 태 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평가센터 소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이 제도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작동이라는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맞는 정책방향, 그리고 장단기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수급자 관리 및 예산집행 효율화, 사각지대 해소, 정책환류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와 지속적·체계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모니터링의 법제화, 대상별 모니터링 연계, 여타 복지정책과의 통합적 평가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 단기과제로 모니터링 주제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안 개발, 효율적 업무자침 마련, 모니터링의 법제화 방안 마련 등을, 장기과제로 모니터링 법제화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빈곤실태

2006년 12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53만5천명(83만2천가구)으로 총 인구수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3.2%로 나타난다. 수급자의 대부분(94.5%)은 일반수급자이며, 나머지 5.5%는 시설수급자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보호되는 특례수급자는 전체 수급자 가구 831,692가구의 2.9%인 23,848가구로 나타나는데, 특례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급여특례(26.6%)와 자활급여특례(16.4%) 수급자가 전체의 51.5%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은 수급자 규모에 비해 증가속도가 빨라서 1인당 지원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보장제도 전체 예산은 <표 1>에서 보여지듯이, 2000년의 2조4천억 원에서 2006년 5조3천억 원으로 약 2.2배, 2007년에는 6조6천억 원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급자 1인당 지출비용을 보면, 생계급여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의료급여의 차상위층 지원확대로 인한 지출이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특례급여 수급추이를 살펴보면, 향후 국민기초보장제도는 의료급여, 자활급여를 중심으로 지출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예산 추이

	예산(억원)				수급자(만명)				
	계	기초보장	의료급여	자활지원	기초보장	의료급여			자활지원
						계	1종	2종	
2000년	23,321	12,219	10,323	779	149	157	81	76	-
2002년	33,819	15,439	16,904	1,476	135	142	83	59	6
2003년	35,228	15,959	17,617	1,652	137	145	86	59	6
2004년	39,126	17,424	18,810	2,892	140	153	92	61	6
2005년	46,149	21,645	22,148	2,356	143	176	100	76	6
2006년	53,338	23,412	26,623	3,303	145				6
2007년	65,835	26,697	35,778	3,360					

주: 수급자는 시설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수급자 규모임.  
자료: 보건복지부, 예산안 자료 및 수급현황 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한 노대명(200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 「제1차 빈곤포럼」에서 재인용.

한편, 우리 사회의 빈곤실태를 살펴보면, 2006년 현재 자영자가구와 미취업자가구가 포함된 전체가구의 빈곤율은 도시근로자가구의 빈곤율과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약 4~5%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또한 빈곤의 동태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2003년에서 2005년까지 3년간 1분기 이상 빈곤을 경험한 적이 있는 가구의 규모를 살펴본 결과, <표 3>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체 가구의 35.1%가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sup>1)</sup>,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표 2. 2006년 전체가구 대상 빈곤율 현황

기준소득	빈곤선	전체가구		도시근로가구	
		1인 이상	2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경상소득	중위 40%	11.9	10.3	6.9	6.5
	중위 50%	16.7	15.0	11.8	11.4
	중위 60%	22.2	20.4	18.1	17.6
	최저생계비	11.1	10.0	5.3	5.1
공공부조전 경상소득	최저생계비	12.7	11.4	6.4	6.2

자료: 통계청(2006), 전국가계조사자료 원자료, 노대명(2007)에서 재인용.

1) 노대명(2006), 「빈곤의 동태적 특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3. 2003~2005년 빈곤경험가구의 유형별 분포

	빈곤무경험가구	일시빈곤가구	반복빈곤가구	계속빈곤가구	계
상대빈곤선 (중위소득 50%)	64.9%	14.9%	16.1%	4.1%	100.0%

주: 이 분석결과는 2003년~2005년 전국가계조사자료의 패널화된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되었음.  
자료: 노대명(2006), 『빈곤의 동태적 특성 연구』.

##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우리 사회의 최종안전망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sup>2)</sup>. 먼저 저조한 빈곤 개선의 효과를 지적할 수 있다. 보고된 결과를 검토해보면, 현행 제도는 빈곤지표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된 결과를 살펴보면, 기초보장제도의 급여를 포함하는 공공부조성 급여는 절대빈곤율을 약 0.78%(=8.75%-7.97%) 감소시키고 있지만(2000년 기준), 사적이전의 경우 절대빈곤율을 약 4.23%(=12.2%-7.97%) 감소시키고 있어, 공적이전보다 빈곤지표 개선에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빈곤층에 속함에도 현 제도의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보면, 2003년 현재 소득이 최저생

계비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전인구의 7.7%인 약 37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sup>3)</sup>. 비수급 빈곤층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로는 선정기준(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의 불합리성 혹은 부적정성, 개별가구의 능력(소득인정액, 부양정도)의 과다책정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2003년 현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장받지 못하는 자는 전체 인구의 3.7%인 약 17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범위에 속하는 빈곤위험 계층은 전인구의 약 1.8%인 8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셋째로 보충급여에 따른 소득신고의 부정확성 및 대상자간의 형평성을 들 수 있다. 현 제도의 기본 원리중 하나인 보충급여 방식은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하는 만큼 급여가 감소하는 구조이므로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같아지는 체계이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소득과약이 어려워 수급자간 또는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수급자들 대부분이 비공식부문(영세자영업, 일일노동 등)에 종사하고 있어 소득과약이 어렵고, 신고를 통해 소득을 과약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액만큼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고의 성실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로 빈곤예방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빈곤층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전락하기 전에 그 요인(의료, 교육, 주거 등)을 제거하는 예방기능이 국가적 또는 개인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만, 현 제도상에서는 빈곤에 대한 예방기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섯째로 탈빈곤 정책으로써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탈빈곤은 빈곤가구의 물적자본 또는 인적자본이 축적되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현 제도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을 축적할 경우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탈빈곤하기에는 어려움을 정도의 일정수준이상의 자본 축적을 저해하거나 보유자산도 소진해야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어 본래 제도의 목적인 탈빈곤 정책

으로써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여섯째로 근로빈곤층(Working poor)등 상대빈곤층에 대한 대책의 미흡성을 지적할 수 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절대빈곤선(최저생계비)을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절대빈곤선 이상, 상대빈곤선 이하의 계층에 대한 대책이 미약한 실정이다.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문제, 소득불평등의 문제, 양극화 문제 등을 감안하면 상대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연구에서도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에서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서 본래의 취지와 현실이 상당히 괴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함에도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으며<sup>4)</sup>, 부양의무자 조사방식과 관련하여 실제의 지원 여부 및 부양능력 과약이 용이하지 않아 실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자의적인 행위로 적용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sup>5)</sup>.

또한 소득신고의 비성실성으로 정확한 소득과약이 어려워짐에 따라 부정수급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6)</sup>. 2004년의 경우 부정수급 발생률이 12.5%였으며<sup>7)</sup>, 전담공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6가지 문제점은 김미곤(200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및 쟁점, 『제1차 빈곤포럼』의 내용을 주로 참조하였고, 나머지 모니터링 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해당연구를 각각 참조하였다.

3) 이현주 외(2005),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이태진 외(2003),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정책과제』; 여유진 외(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 평가』; 이태진 외(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및 관리평가 - 일선 실무자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태진 외(200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I -수급자와 일선담당실무자에대한 질적 접근-』.

5) 이태진 외(2003); 여유진 외(2004); 이태진 외(2006); 이태진 외(2007)

6) 김미곤 외(2002); 이태진 외(2003); 여유진 외(2005); 이태진 외(2006)

무원들도 수급자의 대부분(93.1%)이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8)</sup>.

또한 보건복지시스템구축에서도 정확한 시점자료의 반영이나 다른 행정자료들과의 연계가 어려워 이를 활용한 자산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통합조사표상 가구원수와 실제 가구원수가 같지 않은 경우가 16.7%로 조사되고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 소득이 통합조사표상 소득보다 약 11.7만원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sup>9)</sup>.

그리고 사례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수급자의 변화되는 요구에 대응하지 못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자활사업의 성과와 관련해서 참여인센티브 미미와 참여자의 소득과약에 대한 거부감으로 참여기피 및 거부가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sup>10)</sup>. 또한 참여자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되지 않았거나 지역간 편차로 인해 충분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up>11)</sup>.

마지막으로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현재의 전달체계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금년 7월에 마무리된 전달체계 개편은 시·

군·구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에 집중하도록 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제로 1차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민생활지원팀 내 행정직 공무원과의 효과적인 업무분장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업무부담 가중으로 실질적인 사례관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의 실제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의 필요성 및 의의

앞선 논의를 통해보면, 빈곤문제를 사회적·국가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이를 원조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목표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각지대 문제, 수급자 근로의욕 감퇴, 부정 수급 양산, 예산 낭비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이 수급자의 기여가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양산하고, 자칫 제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결과를 야

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목적에 맞게 정확한 대상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효율성, 효과성, 적절성을 도모하여 제도 자체의 완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평가 작업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하겠다.

#### 2) 모니터링의 현황 및 문제점

지금까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사업 실적을 통한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센터가 2000년에 설립된 이후 2006년까지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3건의 연구<sup>12)</sup>와 더불어 총 5차례의 모니터링 사업<sup>13)</sup>을 수행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빈곤

층 연구에 적합한 질적 접근방식으로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각각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제도 시행상의 점검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같은 모니터링 사업에 있어서도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의 정책환류체계의 부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공식적으로 검토되어 정책으로 반영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아래 <표 4>와 같은 제도개선사례가 있지만, 이는 부양의무자의 선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어<sup>14)</sup>, 조사방식 등으로 야기되는 제도운영상의 문제 즉, 부정수급문제 등은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향후 예측되는 제도변화(개별급여체계 도입 등)에 맞는 평가 및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재하여 제도변화의 중단기적 전

표 4.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사례

개선 또는 개정내용	개선수위	개정(시행)시기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법률 공포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004.3 (2005.7.1)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005.12.23 (2007.1.1)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 - 최저생계비의 120% → 130%	동법 시행령 개정	2006.2.22 (2006.7.1)

자료: 보건복지부(2007),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2) 이현주 외(2002), 김미곤 외(2003), 김안나 외(2005)

13) 김미곤 외(2002), 이태진 외(2003), 여유진 외(2004), 이태진 외(2006), 이태진 외(2007)

14) 그나마도 모니터링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7) 여유진 외(2005)  
8) 이태진 외(2003)  
9) 김미곤 외(2002)  
10) 김미곤 외(2002); 이태진 외(2003)  
11) 이태진 외(2003)

망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방법 개발이 미흡할 수 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연구의 분석틀과 방법론에 있어서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들 수 있다. 기존 모니터링 체계에서는 연구별로 조사대상, 표본 수, 설문 문항, 분석방법 등이 상이함에 따라 분석 및 평가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의 원칙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의 모니터링 연구에서는 연구별로 연구목적에 따라 조사방법을 선택하고 있으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계획에 의거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니터링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 그리고 향후 추진해야 할 중·단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정책 목표 및 정책 방향

먼저 정책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급자 관리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의 발굴은 물론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축소효과를 제고한다.

셋째, 모니터링 결과의 정책환류체계를 구축(예. 모니터링 법제화)해야 한다.

이를 통한 정책방향으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모니터링 법제화, 개별급여체계에 따른 급여별 연계 모니터링, 여타 복지정책과의 통합적 평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2) 단기 추진과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모니터링의 주체, 대상, 운영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외 주요국가 공공부조제도 혹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사전연구를 통해, 단순 부정수급 발굴 및 제재만이 아닌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개선 사례를 동시에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니터링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와 연계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니터링 지표에 대해서는 종단면 조사 혹은 패널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두 번째로, 소득, 자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방식, 부정수급 처리 관련 수급자 및 공무원 제재 등 효율적인 업무지침을 반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의 목표달성과 관련하여 점검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지표들의 장애요인을 유형화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① 대상 및 급여, 운영방안 등과 관련하여 제도내용 및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요인들의 유형화, ② 시·군·구간 연계 협조 강화, ③ 기초자료에 대한 전산화 및 기타 정부부처와의 연계를 통한 조사방식 개선, ④ 개인정보 유출 및 조사로 인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들의 반발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사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⑥ 전담공무원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 부담 및 기타 추가적 업무에 따른 문제점 파악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를 통한 모니터링의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한다. 모니터링 법제화를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수요자, 공급자, 운영주체별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존의 중앙주체, 민간주체의 자체평가와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색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이에 대한 공급자 및 수요자의 반발 또는 행태변화를 분석하도록 한다. 그리고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 단위에서 모니터링 요원을 임명하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결과의 정책환류를 위한 공론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 (3) 중장기 추진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모니터링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평가는 현재 복지부에서 중앙현장점검을 통해 일부 시·군·구를 대상으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책환류 체계에 있어서는 제한적이고 비체계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법(혹은 시행령 및 규칙)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마다의 변화를 볼 필요가 있는 항목은 매년 조사를, 중단기적인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항목은 격년 내지는 격3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 및 평가항목별로 종합적인 시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전문가 및 연구기관간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 법제화를 위한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주요하게 포함되어야 반영되어야 한다. 먼저, 모니터링 주체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부주체로 실시할 것인지,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 정부와 민간이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만일 정부나 민간에서 각각 별도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경우, 모니터링 관련 부서(혹은 기관)를 설치할 것인지, 기존 부서(혹은

민간기관 위탁에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의 주요 사례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모니터링을 위한 재원이다. 정부가 직접 혹은 민간에 위탁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할 경우, 모니터링 요원운용, 제도운영 등을 위한 재원이 필요한데,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복지정책평가예산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모니터링 전달체계이다. 모니터링 실시를 위해서는 시·군·구(혹은 읍·면·동) 단위로 모니터링 요원의 배치와 배치가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요원은 전담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과 업무과중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되므로, 기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여 운용할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제재 및 규제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모니터링의 기본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통해 발굴된 수급자와 공급자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리방안이 함께 담겨져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제도

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환류체계를 확립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선은 물론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가능성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의 법안 내용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 기타 복지정책과의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연계하여 복지정책의 통합적 모니터링 평가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적 사회복지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조사방법 등에 대한 사전적 구상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의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복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화에 따른 급여간 모니터링 연계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각 부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급여)에 대해서 수급자의 욕구별로 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 각 개별 급여에 대한 급여체계, 전달체계 등을 고려해서 모니터링의 주체, 범위 등을 설정하기 위한 작업이 요구된다. 